

택시 유가보조금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윤기섭 의원 등 38명

나. 의안번호 : 제1045호

다. 제출일자 : 2023. 8. 14.

라. 회부일자 : 2023. 8. 21.

## 2. 주 문

-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택시 연료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다른 택시 연료인 수소, 전기, 휘발유 등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택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양한 요인 등으로 인해 택시 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택시 산업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측면에서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임.
-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택시 연료 중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료는 매우 한정적으로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택시 연료들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또한, 수소, 전기 등의 친환경 에너지 연료를 사용하는 택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택시 연료에 유가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친환경 교통체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침체된 택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수소, 전기, 휘발유를 이용하는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나. 기타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sup>1)</sup>

○ 택시정책과 : 원안 가결

- 수소, 전기 등 친환경 에너지 연료 사용 장려 및 침체된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에 동의함

### 4.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나. 정 부 : 국토교통부

---

1) 택시정책과-31499('23.9.4.)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 요

- 동 건의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워진 택시 업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택시가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변화되고 있는 택시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유가보조금은 각종 법령 등<sup>2)</sup>에 따라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01년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해 휘발유 대비 액화석유가스(LPG<sup>3)</sup>)와 경유의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임

- 현재 택시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3. 3. 23., 2020. 5. 19., 2021. 3. 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3)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는 유전에서 원유를 채취하거나 원유 정제시 나오는 탄화수소 가스를 비교적 낮은 압력(6~7kg/cm<sup>2</sup>)을 가하여 냉각 액화시킨 것

법」(이하 ‘여객자동차법’)제21조의44)에 따라 LPG 및 경유를 연료로 사용<sup>5)</sup>하는 택시만 유가보조금을 지원<sup>6)</sup>받을 수 있음

- 실질적으로 택시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는 LPG 및 경유의 현재 유류세에서 '01.6월에 상승한 유류세 분을 뺀 금액을 리터당 지원하는 것으로 결국 당시 세제개편으로 인해 상승한 연료의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sup>7)</sup> 예시 ('23.1. 기준)

LPG	경유
▶ 현재유류세(221.36원/ℓ) - '01.6월 당시 유류세(23.39원/ℓ) = 197.97원/ℓ	▶ 현재유류세(528.75원/ℓ) - '01.6월 당시 유류세(183.21원/ℓ) = 345.54원/ℓ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5)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① 제3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자동차의 다음 각 호의 연료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한다. 1.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수소 2.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천연가스(CNG), 수소 3.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21조의4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7)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9조(유가보조금 지급단가) ②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급 단가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택시에 사용되는 연료: 현재 유류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액(23.39원/ℓ) ⑤ 제3조제1호나목의 유가연동보조금에 대한 지급단가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가.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원/ℓ) - 기준가격(1,700원/ℓ)}의 50%. 다만, 183.21원/ℓ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은 차량의 등록지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의 직전 주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지역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 서울시도 「2023년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및 관리계획」에 따라 23년도에 법인택시(255개사) 22,918대, 개인택시 49,144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sup>8)</sup>하고 있으며, 택시 운송사업자 등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연료구매카드<sup>9)</sup>를 사용하면 카드사<sup>10)</sup>에서 유가보조금을 선부담하고 이후 카드사에서 서울시해당 금액 청구를 통해 지급하고 있음
- 현재 택시 연료 다변화로 휘발유 및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택시들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전기택시는 국가적인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으로 적극 장려하는 상황이며 택시 업계에서도 전기택시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전기 및 수소택시 현황 ('23.6 기준)

종류	계	법인	개인
전기택시	6,008대	361대	5,647대
수소택시	6대	0대	6대

- 하지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8<sup>11)</sup>에서는 수소 연료보조

8) 「2023년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및 관리계획」 택시정책과-3164(2023.1.27.)

- 기간: '23.1.1.~12.31. /예산: 108,779백만원/ 지급단가 : LPG 197.97원/ℓ, 경유 345.54원/ℓ

9) 카드사업자(신한, 롯데, 현대)가 유가보조금을 선부담하고 이후 카드사가 서울시해당 청구 후, 서울시는 청구내역 확인후 카드사에 보조금 지급

10) 「2023년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및 관리계획」 택시정책과-3164(2023.1.27.)

- 기간: '23.1.1.~12.31. /예산: 108,779백만원/ 지급단가 : LPG 197.97원/ℓ, 경유 345.54원/ℓ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8(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대상) 법 제50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전세버스운송사업자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 4. 개인택시운송사업자(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금의 지급대상으로 택시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에 대한 유가보조금 등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서도 택시 유가보조금 대상 연료를 LPG, 경유로 한정<sup>12)</sup>하고 있음

- 택시업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택시 영업률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울시도 택시업계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택시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법 내에 전기와 수소 등 다변화되는 택시 연료를 유가보조금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하여 택시 유가보조금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택시의 원활한 운행은 물론 택시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동 건의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12)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① 제3조제1호가목의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자동차의 다음 각 호의 연료 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한다. 1.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천연가스(CNG), 액화석유가스(LPG), 수소 2. 전세버스에 사용되는 천연가스(CNG), 수소 3.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